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중소벤처기업부에 청년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(별정직 6급 상당 1명)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2. 9. 00. 공포·시행)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, 청년정책과장의 분장사무에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(2022. 9. 5.~ 9. 1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9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의2.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

별표 3 중 총계 “482”을 “483”으로 하고, 별정직 계 “4”를 “5”로 하며,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(장관정책보좌관) 1 다음에 “청년정책 담당(6급 상당) 1”을 신설한다.

별표 4 중 총계 “482”을 “483”으로 하고, 별정직 계 “4”를 “5”로 하며,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(장관정책보좌관) 1 다음에 “청년정책 담당(6급 상당) 1”을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창업벤처혁신실) ① ~ ⑧ (생 략) ⑨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10. (생 략) <u><신 설></u> 11. (생 략) ⑩ ~ ⑱ (생 략)	제10조(창업벤처혁신실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 ⑨ ----- -----. 1. ~ 10. (현행과 같음) <u>10의2.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</u> <u>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</u> <u>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</u> <u>영 지원</u> 11. (현행과 같음) ⑩ ~ ⑱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3]

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(제15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482</u>	<u>483</u>	+1
·	·	·	
·	·	·	
별정직 계	<u>4</u>	<u>5</u>	+1
·	·	·	
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(장 관정책보좌관)	1		
<u>청년정책 담당(6급 상당)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4]

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(제15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482</u>	<u>483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별정직 계	<u>4</u>	<u>5</u>	+1
•	•	•	
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(장 관정책보좌관)	1		
<u>청년정책 담당(6급 상당)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